

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

제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3가합2545 채무부존재확인
원 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
피 고 A
변 론 종 결 2013. 11. 15.
판 결 선 고 2013. 12. 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

가.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, 피고는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
나. 위 각 보험계약의 각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2 특별약관에 따르면, 원고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(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, 사용 및 관리를 제외)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나, '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'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(이하 위 면책조항을 '이 사건 면책조항'이라 한다).

다. 피고는 충남 아산시 B의 토지주로부터 피고가 사육하는 소의 사료용 볏짚을 얻어 사용하던 중 위 볏짚이 비에 젖어 못 쓰게 된 데다가 농번기가 다가오자, 2013. 4. 5. 위 B에서 위 볏짚을 태웠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볏짚의 불티가 인근 소나무 묘목밭으로 튄 바람에 소나무 1,500그루가 타서 못 쓰게 되었다(이하 위 사고를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.

라. 피고는 2012. 4. 19.경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태우던 볏짚이 사료용 볏짚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



고의 직무수행에 따른 사고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.

나. 그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직무수행에 따른 사고라고 가정하더라도,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하여 명시,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,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,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·설명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·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(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2다 107051 판결 등 참조).

다.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·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할 것이다.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"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케 했을 때 보장된다"고 설명하면서, 면책조항에 관하여는 자살이나 출산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"약관을 참고하라"고만 설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,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을 명시·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.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·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,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,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5-04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지현

 판사 이승연

 판사 백우현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05-04

별 지

1.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: A
보험계약일 : 2009. 3. 23.
보험명 : 무배당LIG굿스타트운전자보험
보험자 : 엘아이지손해보험(주)
보험증권번호 : C
2.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: A
보험계약일 : 2009. 8. 27.
보험명 : 무배당LIG행복한인생보험
보험자 : 엘아이지손해보험(주)
보험증권번호 : D